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
심 사 보 고 서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333 |
|----------|-----|

2011년 7월 7일  
운 영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1년 6월 7일 김정재(한나라, 비례) 의원 외 10인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6월 15일

다. 상정일자 :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(2011년 7월 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

(제안설명자 : 김정재 의원)

□ 제안이유

- 최근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에서 정한 의안제출 기한(회기시작 10일 전)을 준수하지 않은 채 위원회 회의일정에 임박해 발의되는 의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.
- 이로 인해 시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와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, 조례안의 위원회 상정시기를 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되,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4조제5항 신설).
- 나.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10일,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1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되,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(안 제54조의2 신설)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(수석전문위원 : 윤 병 국)

#### 가. 규칙개정의 타당성 등

- 본 개정규칙안은 시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해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, 조례안의 위원회 상정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음.
- 먼저,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한 안 제54조제5항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·반영함으로써 졸속적인 조례 입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조례안의 위원회 상정시기를 규정한 안 제54조의2는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충분한 검토도 없이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조례 제·개정안에 대한 보다 충실한 심사가 보장될 것으로 판단됨.
- 더불어 본 개정규칙안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공청회 생략 및 상정시기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의회 운영의 유연성도 확보하고 있음.

#### 나. 타 조항과의 관계

- 현재에도 위원회가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(회의규칙 제59조),
  - 동 조항은 소관 의안과 관련된 공청회 개최여부에 대한 일차적인 결정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한 임의규정인데 반해,
  - 안 제54조제5항은 시민들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제도의 심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강행규정이므로 두 조항은 충돌하지 않고 병립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.
- 현재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은 ‘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제출’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
  - 동 조항은 의안의 제출시기에 관한 내용이므로 의안의 위원회 상정시기를 제한하는 안 제54조의2와는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.
  - 나아가 동 조항은 조례안을 포함하여 예·결산안, 동의(승인)안, 결의·건의안 등 모든 의안에 적용되는 것인 바, 조례안만을 대상으로 하는 안 제54조의2와는 다른 취지가 인정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 (재석위원 9명)

7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

|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관련<br>333 |
|----------|-----------|

제안년월일 : 2011년 7월 7일  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본 개정안의 신설 안 제54조의 2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정시기 제한 일수를 수정할 필요성이 요구됨.

2. 주요골자

- 가. 조례안의 위원회 상정시기 제한 기준을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“10일”을 “7일”로하고,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“15일”을 “10일”로 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
- 나. 예산조치
- 다. 기타사항

##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**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**

제54조의2(조례안의 상정시기)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 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7일,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. 다만,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수정안 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| 수 정 안  |
|--|--|--|
| <p>제54조(위원회의<br/>①~④)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심사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 | <p>제54조(위원회의 심사)①~④<br/>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위원회는 제정조례안<br/>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<br/>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<br/>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의결<br/>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54조의2(조례안의 상정시기)<br/>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<br/>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<br/>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의 경<br/>우에는 <u>10일</u>, 제정조례안<br/>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<br/>에는 <u>15일</u>을 경과하지 아니한<br/>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<br/>상정할 수 없다. 다만, 긴급<br/>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<br/>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<br/>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| <p>제54조(위원회의 심사)①~④<br/>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54조의2(조례안의 상정시기)<br/>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<br/>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<br/>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의 경<br/>우에는 <u>7일</u>, 제정조례안 및<br/>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<br/>에는 <u>10일</u>을 경과하지 아니한<br/>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<br/>상정할 수 없다. 다만, 긴급<br/>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<br/>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<br/>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|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4조의2(조례안의 상정시기)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7일,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. 다만,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제54조(위원회의 심사) ① ~ ④ (생략)</p> | <p>제54조(위원회의 심사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  |
| <p>&lt;신설&gt;</p>               | <p>⑤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 |
| <p>&lt;신설&gt;</p>               | <p>제54조의2(조례안의 상정시기)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7일,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. 다만,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|